

의안 번호	2529	<b>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2. 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6.(수)

## 2. 제안이유

-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, 운영내용 등을 정비하여 문화의 전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부가가치세 납부규정 삭제 및 사용료 납부기한 예외규정 신설 (안 제8조제1항)
- 나. 사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 및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8조제4항)
- 다. 문화예술단체 공연에 대한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례 감면 삭제(안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)
- 라. 관람권 검인 필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관람권 수탁·대행 규정 삭제(안 제12조)
- 마.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(안 제13조제2항)
  - 무료입장권 발행 → 유보석 지정

- 바. 문화센터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기강좌 12주 과정 원칙 규정 삭제(안 제15조)
- 사. 불필요한 조문 삭제
  - 제25조(시행규칙) 삭제
- 아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
- 나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
- 다. 「소비자보호법」 제16항 및 「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 제8조
- 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3 별표3의2
- 마.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제1조 및 제3조의 별표Ⅱ 중 10

## 5. 검토 사항

### (1) 제정배경

-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, 운영내용 등을 정비하여 문화의 전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.

### (2) 내용검토

#### 가. 사용료 납부 및 반환

##### ○ 안 제8조제1항

- 부가가치세 납부 규정 삭제로 사용료 전액 구비화
- 사용료 납부기한 예외 규정 신설로 사용자 현실 반영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

##### ○ 안 제8조제4항

- 사용료 반환 규정 3가지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운영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로 운영의 책임성과 사용자 권익 보호

**나. 특례 감면 (안 제9조제1항~3항)**

- 문화예술단체의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적용 특례 조항은 일반 문화예술단체 공연과의 형평성 논란 발생의 여지가 있고, 흥행성 개념 모호하여 해당 규정 삭제로 운영 공정성 제고

**다. 관람권의 발행 등 (안 제12조)**

- 관람권 검수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유연성 확보
- 관람권 수탁·대행 규정 삭제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된 법적 분쟁 소지 최소화

**라. 개설 (안 제15조)**

- 정기강좌 12주 과정 규정을 삭제하고 수요에 따라 강좌기간 조절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의 유연성 향상

**6. 검토 의견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, 운영내용 등을 정비하여 문화의 전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규정 삭제 및 사용료 납부기한 예외규정 신설, 안 제8조제4항 반환 규정 구체화 및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, 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문화예술단체 공연에 대한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례 감면 삭제, 안 제12조 관람권 검인 필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관람권 수탁·대행 규정 삭제, 안 제13조제2항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, 안 제15조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기강좌 12주 과정 원칙 규정 삭제 등임.

-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,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선제 반영으로 그 간 문화의 전당 운영 상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위한 것으로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## 부가가치세법
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#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1조의3(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)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.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.

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2] <개정 2024. 8. 27.>

**이용료의 반환기준(제21조의3 관련)**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	가. 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- 위약금(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
	나. 이용개시일 이후	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이용기간(일수)})] - \text{위약금}$ 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이용한횟수}}{\text{계약상이용횟수}})] - \text{위약금}$
2.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	가. 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+ 위약금
	나. 이용개시일 이후	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경과한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이용기간(일수)})] + \text{위약금}$ 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: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이용한횟수}}{\text{계약상이용횟수}})] + \text{위약금}$

**비고**

- "이용개시일"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,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.
- "이용료"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.

## 소비자기본법
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## 소비자기본법시행령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##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고시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 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 연수표는 각각 별표 I, 별표 II, 별표 III, 별표 IV와 같다.

별표II중 10 <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 >

④체육시설업, ⑤레저용역업, ⑥할인회원권업 (1-2)		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	○ 계약해제	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
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	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	
3) 신체상 피해 발생	○ 배상액 배상	
4)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*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
- 이용개시일 이전	○ 반환금액 환급 · 반환금액 = 이용료 + 위약금	
- 이용개시일 이후  ·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·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	○ 반환금액 환급  ·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$\frac{\text{이미 경과한 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 이용 기간(일수)}}$ )] + 위약금  ·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 )]+ 위약금	
5)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*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, 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. 다만,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
- 이용개시일 이전	○ 반환금액 환급 · 반환금액=이용료-위약금	
- 이용개시일 이후  ·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·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	○ 반환금액 환급  ·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$\frac{\text{이미 경과한 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 이용 기간(일수)}}$ )] - 위약금  · 반환금액=[이용료-(이용료× $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$ )] - 위약금	